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상정된 안건

- | | |
|---|-----|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 … 2 |
|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 … 2 |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 … 2 |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 … 2 |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 … 2 |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 … 2 |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 … 2 |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 … 2 |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 … 2 |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 … 2 |
|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 … 2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2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2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 저희도 여러 일정 때문에 사실 이 법안소위는 오늘 1시간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김선교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17년에 도입됐고 3년씩 2회 연장을 해서 올해 말인 2025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2개의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선교 의원안은 3년을 윤준병 의원안은 5년을 각각 연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년이 적절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인데 어느 게 적절할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이거를 지금 3년씩 2회 연장했고 5년에 일단 기본 동의하는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연장해야 되나요? 그냥 아예 법에다가 이렇게 딱 박으면 안 돼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그것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 일단은 이재명 정부 5년으로 넉넉하게 해 놓고 그사이 스피드 업을 해서 영유아특별회계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5년으로 가자는 뜻이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5년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회의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것이 5년 만기여서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돼서 2025년 1월부터는 현재 지방재정으로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니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재도입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특례규정 연장 논의 당시에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 및 교부금 증가 추세를 볼 때 굳이 추가 증액교부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셔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외에도 고등·평생특별회계 연장 또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등 큰 틀

에서 교육재정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새 장관,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마는 다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은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고교 무상교육 이 법안이 연말에 예산안 처리를 할 때, 사실은 일몰이 해제된 것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월까지 사실상 일몰이 적용된 체제로 지방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부작용이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교 무상교육은 법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우선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무슨 이의 제기나 그런 건 없는데 상대적으로 매년 국고에서 지원해 주던 게 끊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지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호소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5개 교육청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5개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리스트가, 인천·울산 등 5개인데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것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일몰이 되는 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마 교육부와 함께 중재안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재안이 전부 다 묵살이 됐었고 일방적으로 그 법안이 제출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 정부에서 그때도 우리가 여러 차례,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 법안이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교육부장관 계실 때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 부처와 협력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협력했던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도 당시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이행이 없었고, 물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가 그다음에 방기해 왔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일몰이 오고 나니까, 일몰이 도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교육청의 재정문제를 근거로 들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기재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내정됐는데, 기재부와 교육부와 이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실무적으로 누구와 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예산과 과장들이랑 담당 과장이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과장급에서 논의가 되고, 이 법안이 지금 소위에 올라왔는데 과장급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그때 11월 달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처 간에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안에 일몰이 적용됐지요? 6개월 동안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호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관계 부처 간 아직까지, 장관들이 내정된 상태일 뿐인데 이 법안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부처 간 어떤 협의를 했냐고요, 새 정부에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방향이, 장관님들이 오셔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다음 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합니다, 교육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통해서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여러 자리에서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한 어떤 정부에 부담이 되고 특정한 어떤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령인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현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략적 접근이라든지 경쟁적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즘 소위에서도 다 표결로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발언이나 의견은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일몰 연장안을 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굉장히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록으로 남겨 두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이전 정부에서도 그전 정부에서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 없이 법안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정 추이, 지방교육청의 재정문제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부담,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지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 법안은 다 아시는 법안이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그리고 당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세입경정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세수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비용 하나하나를 법률화시키는 것은 예산의 경직성을 상당히 과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막을 힘은 없지만 저희 위원들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 특히 교육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법률화시킨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야 또는 교육의 나머지 분야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 안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자그마치 98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800억 원을 빼냈어도 재정 여건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미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그동안 문제인 정부에서 세수가 좀 넉넉하게 걷히면서 세입 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가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소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5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교육청 모두가 내년 정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77조인데 거기서 세수가 평크나는 바람에, 참 너무 속상합니다. 세수가 평크 나는 바람에 지금 -2조를 세입경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조를 가지고 또 감액을 하게 되면 17개 교육청들은 더 깊은 재정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다 정리해놓은 교육청들은 세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피해가 다 학생들에게 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 4900억만이라도 살리는 것이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권 안정화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법안을 준비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도 사실은 장관 임명이 제청은 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저희가 혹 하고 넘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조의 세입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법률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훈 위원님과 서지영 위원님께서 새로운 수장이 오면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게 그리고 정부가 무상교육 시리즈에 대한 전체를 한번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계속심사로 보류를 해 두고 방안을 찾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멋있으십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저희가 계속심사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갑자기……

○**정성국 위원** 여당이에요, 여당.

○**조정훈 위원** 여당이 되니까 좀 달라졌네.

○**고민정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제 야당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서지영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요.

각각 다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민정 의원안과 강경숙 의원안은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정안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됨으로써 학교장의 판단과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강경숙 의원안은 별도로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이나 그 사용에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왼쪽 편에 서지영 의원안의 내용은 기존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가 당연히 교과용 도서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부분에 대해 세 가지 안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부의 경우에는 일단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긍정을 하고 있으나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 가지 부칙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 11페이지 보면 고민정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은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은 교과용 도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자본을 투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AI 디지털교과서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고 현장에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장관이 오셨고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

까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 반영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막자고 만든 법이 아니라 없었던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처음에 이주호 장관이 AIDT를 추진했을 때에도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 그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가 보지 않은 길이니. 한쪽은 가 보지 않은 길이니 일단 가 보자 하는 거고 또 한쪽은 가 보지 않았으니 불확실하니 지금은 멈춰야 된다 하는 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산업부거나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 제가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께서 여러 설명 주셨지만 이미 지난번에 올라왔던 법안과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나 제가 의견 피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몇 개월을 운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접속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 동의받기도 어렵고, AI 기능은 당연히 없고. 왜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실행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이나 실행, 그러니까 시도 등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원천 차단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든 시범선도학교든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그 학교나 학생들 차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몇 년이고 한번 해 보고 그게 괜찮다는 효과성이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는 충분히 교과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왜? 오늘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에 AI 디지털교과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것을 교과서의 지위로 옮겨 주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없었던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주는 이 법안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위원님들 토론……

백승아 위원님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먼저 이 AIDT 정책을 진짜 저희가 오랫동안 논쟁을 끌고 왔는데요.

4월 5월 학생 AIDT 가입자 수 대비 일평균 접속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저희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디지털원패스 가입자 수 대비 일일 평균 접속하는 사람들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약 10%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10% 정도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러한 교과서를 위해서 들

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하면 24년도에 4290억, 25년도에 5685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도 86.7%, 거의 90%에 달하는 현장 교사들이 다 AIDT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각 교육 주체들이 사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지금 국가재정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세수도 부족하고. 교육 예산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AIDT에 이렇게 큰돈을 쓴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윤석열 정부 무능해 세수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독단적으로 교과서 지위 등 부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현장 교사 반대하고 학생들은 사용도 안 하고 그런데 9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먹는다, 여기에 굳이 헛돈을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걸 갑자기 없애면 그동안 갖춰 놓은 인프라는 어떡하나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코딩 수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활용할 방법은 만들면 되거든요, 현장에서.

저는 이 법안, 교과서 지위 주면 안 된다, 교육자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래 토론해 본 이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 위원님 말씀도 그 취지는 부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다만 제가 교육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해하기로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하면 교과서와 교육자료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생기는 건데 무상교육·의무교육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 구입비만 포함돼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상에. 따라서 이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이 되지만 교과용 자료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것이 돼요. 이 이해가 맞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싶어도, 아까도 우리가 통과는 안 시켰지만 지자체·교육청이 지금 돈 없다고 이런 상황인데, 17개 교육청이 재정 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인데 이걸 교육 자료화시킨다면 무상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시범사업도 해 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이걸 제시할 수 있지만 돈 없는 교육청은 무상교육이 먼저지 이것 돈 없으면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교육교과서 교육자료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어떤 학생과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이 이것을 한번 도입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 또는 경험해 보고 싶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했는지 하는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하시려면 이런 관련된 입법까지 같이 패키지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강경숙 위원님 발언하시고……

○**강경숙 위원** 그것에 대한 것 먼저 하시고.

○**고민정 위원** 그 부분만 제가 교육부에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정부들이 선도학교 사업들을 하지요, 디지털 선도학교 이런 것도 있었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고민정 위원** 그것 할 때 학부모들이 돈 따로 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돈 따로 내지 않습니다, 선도학교는.

○**고민정 위원** 교육부가 지원을 하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특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학교 대상……

○**고민정 위원** 만약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특별사업으로 시범학교 지정해서 하게 되면 교육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교육격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육효과가 그렇게 뛰어났으면 너도나도 사용했겠지요.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도 사용 안 하고 학생들 접속률 10%인데 교육격차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금도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까지 교과서 법정주의, 효과성, 재정 이런 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 외의 측면에 대한 말씀만 두어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5월 15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가 개보위라고 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라고 해서 시정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등이나 혹은 데이터 상업화 위험이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개인정보의 항목이라든지 목적, 보유기간 이런 것들이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되지만 일부 사항이 누락된 것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 장애학생이나 교원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보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 접근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조공학기기의 호환성 등에서도 심각하게 미비점이 있다라는 것이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구교육청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진정한 교육의 본령이라 그럴까,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구교육청에서는 자율적인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5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그리고 그 교사 응답

에서 보면 77.4%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9.1%가 ‘학생 맞춤형 지원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의 없이 강행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교사하고 기술적 오류라든지 수업의 파행이라든지 자율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적시해 주는 것은 국회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법정주의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씁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물론 국가교육과정을 쓰는 국가도 몇 개는 더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강제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교과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강제성에 가깝고 교육자료는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자료화, 그러니까 AI 대격변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패러다임은 그런 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더더군다나 법정으로 조금 더 교육자료로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실행 결과를 토대로 교육용 도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부권을 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은 계획심사로 보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정훈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이 법은 넘겨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저희는 반대를 하고, 표결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표결하지 않고 그냥 계시면, 기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지영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도 법안이 있으니까.

○조정훈 위원 서지영 위원님 법안도 있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정훈 위원 예.

○서지영 위원 제 의견은.....

○조정훈 위원 법안을 내셨으니까 입장을.....

○소위원장 문정복 예, 속전속결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AIDT 논쟁은 우리 22대 국회가 열린 첫 상임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1년간 계속된 논쟁입니다. 아마 그때 몇 차례 하고 나서 제가 논점까지 정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고 찬성토론·반대토론도 본회의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쟁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쟁점이 또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AIDT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법안을 냈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용 도서자료로 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던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논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당시에 반대했었고, 철도 놓을 때마다 반대했었고, 각 지방에서 자기 지역에 철도 놓으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 지금 와서 그 지역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놀랍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 수업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AIDT 교과서 개발 프로그램을 코딩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서로 개발됐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인프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해 주세요.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과서 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동안 투입됐던 많은 재정, 투입됐던 인력·시간 그다음에 많은 논란·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의 비과학적인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가 아니지요. 앙케이트 같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1년 내내 이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 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론전을 통해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미 시장은 AI를 이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의 시장들이 다 재편되고 있고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위원장 문정복**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서지영 위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새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 요소로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현장에서 더욱더 자리매김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서지영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백승아 위원**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

○**백승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가본 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디지털 자료 80%였는데 다시 종이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기기 사용 의무화했던 스웨덴, 읽기 능력 추락으로 다시 완전 중단 계획 발표했습니다. AIDT 우수 사례로 교육부가 소개했던 나라지요. 에스토니아, PISA 2022에서 읽기, 과학, 수학, 창의력, 사고력 다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IDT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코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적 없고요. 디지털 인프라 소비되는 것, 이 아까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견에 다른 방향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 멈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 왜곡한 적 없어요. 발언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조정훈 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기권.

세 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순서를 바꿀까 싶습니다.

의사일정 10항 및 제1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선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10항·11항 전자담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논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가 좀 복잡하게 필요하다 그러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 안은……

○조정훈 위원 그래서 7~9항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7~9항?

○조정훈 위원 예. 이번 안은 제가 법률 발의한 사람으로서, 아마 강경숙 위원님도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강경숙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건데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말씀하신 것 법안이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재위 관련 담배법에 의하면 액상담배라는 그 정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법사위에서 검토를……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조정훈 위원 논의를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저는 7~9항……

○소위원장 문정복 논의를 뒤로 미루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문정복 갑자기?

○강경숙 위원 예,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안인 7~9항부터 먼저 시작하고, 10항·11항은 다음번 법안소위에 1번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그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이상 7항부터 9항까지 3건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1페이지 보시면 조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서 한 번 심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그때 제기됐던 대체토론 과정상에 나왔던 논의사항들을 정리해 놨고요.

3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안 모두 학생의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 관련되는 내용인데 우선 조정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고, 서명옥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좁혀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학칙으로 제한이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하고 그다음에 사이버폭력이나 학습권 침해 가능성 이 양 부분을 비교 형량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4페이지 보시면 인권위원회도 2014년도에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얘기를 했다가 2024년 10월 7일에는 의견을 바꿔서 담임교사 승인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을 갖추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3건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근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기본법에 비슷한 내용이 2024년 12월에 신설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더라도 양 내용을 비교해서 좀 수정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조정훈 의원안 중에서 교내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내 사용 제한이 아닌 수업 중 사용 제한으로 수정하고 제한방법,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서명옥 의원님 안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 초등학생으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인선 의원안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제한방법,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스마트기기 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대표발의한 의원실에 연락 없이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좀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수정의견 중에서 학교 전체가 아니라 수업 중에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 규정에서 '장애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그다음에 '학칙 등등으로 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간략하게,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 법안으로 할 내용을 이미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옮겨서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큰 혼란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모든 걸 법으로 옮리면 과잉 입법이나 그런 논란이 없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기본권 제한 소지도 있으니까 개인의……

○**정을호 위원** 현재 그 부분들이 우려점들이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아니지

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기본……

○**정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올리는 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의원님들 취지에 동의합니다, 교육부는.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이렇게 못 박아서 법률로 제정하는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 의회정보실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건데 25년 2월에 도서관 의회정보실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2022년 기준 한 4개국 정도가 휴대폰 사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면 프랑스는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고 미국은 18개 주에서 제한을 하는데 법률을 통과시킨 데도 있고 일반적인 정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중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법규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제한을 하긴 하는데 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이나 고시나 하위 법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율은 비슷비슷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전에 초·중등교육법을 미리 의결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의결은 못 해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7월 중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소위에서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다음번 소위에서 의결 절차만 가도록 그렇게……

○**조정훈 위원** 아니, 의결…… 반대가 있으십니까, 지금?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요, 반대 없어도 아까 저희가 AIDT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을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조정훈 위원** 의결이 아니라 표결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위원장 문정복** 아닙니다, 의결.

○**조정훈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회기에 이 회의에서 아까 AIDT 관련해서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병합해서 의결을 하면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법적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예, 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합의해 주신 것 이기 때문에 7월 중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야 되거든요.

그때 합의된 걸로 전제를 하고 의결만 하도록 할 건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부 수정의견 보시면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집어넣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이 시행 예정 조문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문정복 2026년……

○전문위원 윤상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조문 자체가, 저희가 4월에 의결을 했지만 시행은 2026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시행일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공포 후 6개월로 3개 법안이 돼 있는데 3월 1일로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시행일을 3개월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습니다. 아예 이 조문이랑 시행일을 맞춰서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 수정안 넣으실 때 공포일을 3월 더 연장해서 2026년 3월 1일로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 법안소위 열릴 때 합의된 부분으로 의결 절차만 남은 것이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담배 건은 강경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첫 번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정훈 위원 잠깐만,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하지만 못한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결 먼저 하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기조실장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